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연수교육 제도를 도입하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389호, 2021.8.10. 공포, 2022.8.1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연수교육 제도 도입에 따라

1) ‘사전교육’을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으로(안 제3조, 별지 제1호, 제8호~제10호, 제15호 서식)

2) ‘사전교육기관’을 ‘교육기관’으로(안 제9조) 명칭 변경

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의 세부기준 규정
(별표 1)

다. 부동산개발업 실적신고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면적(m²)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준주택에 대한 부동산개발업 실적신고 시 ‘호실’로 관리토록 개정하여 부동산개발업 실적관리 실효성 도모(별지 제13호 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나목 중 “**사전교육**”을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전교육기관**”을 “**교육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사전교육**”을 “**교육**”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사전교육기관의**”를 “**교육기관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사전교육기관으로**”를 각각 “**교육기관으로**”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사전교육기관의**”를 “**교육기관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사전교육**”을 “**교육**”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사전교육기관**”을 “**교육기관**”으로 한다.

제20조 중 “**영업정지처분의**”를 “**영업정지처분과 영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에 관한**”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처분 기준	과징금 금액	처분 기준	과징금 금액	처분 기준	과징금 금액
가.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에 따라 등 록한 사실과 그 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 하여 필요한 사항을 표시·광고하지 아 니한 때	법 제24조 제1항제1호	영합장지 3개월	-	영합장지 6개월	-	영합장지 1년	-
나.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사업실적, 자본금 의 변경, 임원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변경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내용을 보고한 때	법 제24조 제1항제2호	-	-	-	-	-	-
1) 사업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한 때		경고	-	영합장지 1개월	1천만원	영합장지 2개월	2천만원
2) 자본금의 변경을 보고하지 아니한 때		경고	-	영합장지 1개월	1천만원	영합장지 1개월	1천만원
3) 임원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변경 을 보고하지 아니한 때		경고	-	영합장지 1개월	1천만원	영합장지 4개월	3천만원
4) 거짓의 내용을 보고한 때		영합장지 4개월	5천만원	영합장지 4개월	5천만원	영합장지 4개월	5천만원
다.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을 이 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때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기피·방해 한 때	법 제24조 제1항제3호	-	-	-	-	-	-
1) 보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경고	-	영합장지 1개월	1천만원	영합장지 2개월	2천만원
2) 거짓으로 보고한 때		영합장지 4개월	5천만원	영합장지 4개월	5천만원	영합장지 4개월	5천만원
3) 조사·검사를 거부·기피·방해한 때		영합장지 6개월	1억원	영합장지 6개월	1억원	-	-
라.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법 제25조제1 항제6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24조 제1항제4호	영합장지 6개월	-	영합장지 1년	-	-	-
마.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조사·검사를 거부·기피·방해한 때	법 제24조 제1항제5호	영합장지 6개월	1억원	영합장지 6개월	1억원	-	-
바. 법 제21조제1항제2호 또는 제2항에 따 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 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 또 는 자료·물건을 제출한 때	법 제24조 제1항제6호	-	-	-	-	-	-
1)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		경고	-	영합장지 1개월	1천만원	영합장지 2개월	2천만원

을 하지 아니한 때				1개월		2개월	
2) 거짓의 보고 또는 자료·물건을 제출한 때		영업정지 4개월	5천만원	영업정지 4개월	5천만원	영업정지 4개월	5천만원
사. 법 제22조에 따른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반복되거나 시정조치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법 제22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직접 영업정지처분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24조 제1항제7호	영업정지 6개월	1억원	영업정지 6개월	1억원	-	

별지 제1호서식 나목 중 “**사전교육**”을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양수인 2) 중 “**사전교육**”을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2) 중 “**사전교육**”을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2) 중 “**사전교육**”을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제1쪽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6.3.31.>

(제1쪽)

()년도 사업실적 보고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업실적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허위보고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여지거나,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해당되는 곳 []란에 √ 표를 합니다.

보고자	상 호	[]법인 []개인
	등록번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1. 사업별 요약실적 ※ 증명서류: 사업 근거서류(인·허가 서류 사본, 도급계약서 사본 등)

① 일 련 번 호	②사 업 명	③인 · 허 가 명 의 자	④개발 유형		⑤매출액 (백만원)		⑥사업규모						⑦참 여유 형	⑧시 공 사명	⑨인 · 허 가 일	⑩착 공일	⑪준 공일	⑫공 급 시기	⑬신 탁 종류	⑭위 탁자 (등록 번호)	⑮비 고
														(건설 업 등록 번호)	(인· 허가 관청)						
			토 지	시 설	전 체	해 당 연 도	전 체	해 당 연 도	전 체	해 당 연 도	전 체	해 당 연 도		전 체	해 당 연 도						
계	건																				

별지 제14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 관 명

수신 시·도지사

(경유)

제목 사업실적 현황 보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사업실적 현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아 래 -

구분	토지						시설						준주택						참여유형[건(%)]					
	사업건수(건)	사업비(백만원)		매출액(백만원)		사업면적(m²)	사업건수(건)	사업비(백만원)		매출액(백만원)		사업면적(m²)	사업건수(건)	사업비(백만원)		매출액(백만원)		사업규모(호)	A	B	C	D	E	F
		해당연도	전체	해당연도	전체			해당연도	전체	해당연도	전체			해당연도	전체	해당연도	전체							
법인																								
개인																								
합계																								

참여유형 : A. 단독, B. 등록사업자+등록사업자, C. 등록사업자+지주(공동사업주체), D. 등록사업자+공공기관, E. 특수목적법인(설립근거 법률 명시), F. 기타

붙임 개발유형별 세부자료. 끝.

보고기관의 장 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m²]

별지 제15호서식 2) 중 “**사전교육**”을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신청 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등록등업무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제3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신청 등) ① ----- ----- ----- ----- ----- ----- -----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부동산개발 전문인력(특수목적법인인 경우에는 자산관리회사등에 고용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5. ----- ----- ----- ----- ----- ----- -----
가. (생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u>사전교육</u> 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나. ----- <u>사전교육 및 연수교육</u> ----- -----
다. (생략)	다. (현행과 같음)

6. ~ 8. (생략)

②·③ (생략)

제9조(사전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전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1.·2. (생략)

3. 사전교육에 필요한 강의실 및 시설에 관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전교육기관의 지정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사전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전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

6. ~ 8.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9조(사전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 교육기관-----

-----.

1.·2. (현행과 같음)

3. 교육-----

② -----
--- 교육기관의 -----

교육기관으로 -----
--. -----

---.

1. ~ 3. (현행과 같음)

③ -----
--- 교육기관으로 -----

----- 교육기관의 -----

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생략)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u>사전교육</u>을 이수하게 한 경우 3. 4.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것 외에 <u>사전교육기관</u>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0조(<u>영업정지처분 세부기준</u>)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업자에 대한 <u>영업정지처분</u>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 ----- ---. 1. (현행과 같음) 2. ----- ----- ----- <u>교육</u>----- ----- 3. 4. (현행과 같음) ④ ----- ----- <u>교육기관</u>----- ----- ----- ---. 제20조(<u>영업정지처분 및 과징금 부과</u>의 세부기준) ----- ----- <u>영업정지처분과 영</u> <u>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u> <u>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u> <u>과징금의 금액에 관한</u> ---.
---	--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 5. 8.>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

※뒤쪽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작성방법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일
------	------	----------

신청인	① 상호	대표자
	② 영업소(사무실) 소재지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③ 전화번호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출자금액/출자비율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인 경우) 원/ %
	자본금(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 원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수수료	5만원
-----	-----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신청인이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명서류를 말합니다) -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의 출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사무실(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인 경우에는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사무실을 말합니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자격, 학위,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대한 고용계약서 사본 - 신청인이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특수목적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 사본 다. 나목의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설립 인허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을 말합니다)이 외국인인 경우 등록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법률에 의한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합니다),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나.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 있는 기관이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 제7호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 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외국인인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등록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은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허가증 등 인·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합니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6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제7호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이 법 제6조제3호 및 제4호의 결격사유와 중복되지 아니하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28의3. 영주(F-5)의 다목·하목·거목 또는 너목의 체류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여권 사본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의 제출로 법 제6조제3호 또는 제4호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에 필요한 제7호 각 목의 서류 제출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

부동산개발업 양도신고서

※뒤쪽의 경유·처리기관 확인사항, 작성방법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	------	----------

양도인	① 상호	대표자
	② 영업소(사무실) 소재지	③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등록번호	등록 연월일

양수인	④ 상호	대표자
	⑤ 영업소(사무실) 소재지	⑥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등록번호	등록 연월일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양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서명 또는 인)
양수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수수료	없 음
신고인 (대표자) 제출서류	1. 양도계약서 사본 2. 양수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명서류를 말합니다) 다.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의 출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에 한정합니다) 라.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무실(「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사무실을 말합니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마.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1)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자격 또는 학위와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2)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대한 고용계약서 사본 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상근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 1) 특수목적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 사본 3) 나목의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설립 인·허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 양수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을 말합니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서류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210mm×297mm[백상지(80g/㎡)]

법인합병신고서

※뒤쪽의 경유·처리기관 확인사항, 작성방법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합병 법인	① 상호	대표자
	② 영업소(사무실) 소재지	③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등록번호	등록 연월일
합병 법인	④ 상호	대표자
	⑤ 영업소(사무실) 소재지	⑥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등록번호	등록 연월일
합병 후 존속 또는 설립된 법인	⑦ 상호	대표자
	⑧ 영업소(사무실) 소재지	⑨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등록번호	등록 연월일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사업자인 법인의 합병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수수료	없음
신고인 (대표자) 제출서류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공고문
	3.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4.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나.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의 출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에 한정합니다) 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무실(「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사무실을 말합니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라.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1)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자격 또는 학위와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2)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 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대한 고용계약서 사본

210mm×297mm[백상지(80g/㎡)]

부동산개발업 상속신고서

※ 뒤쪽의 경유·처리기관 확인사항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피 상속인	성명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사망일자
	상호	영업소(사무실) 소재지
	등록번호	등록 연월일
	주소	
상속인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전화번호
	성명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상속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수수료	없 음
신고인 (대표자) 제출서류	-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상속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자격 또는 학위와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대한 고용계약서 사본 - 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서류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법률에 의한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합니다),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법률에 의한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합니다),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 있는 기관이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210mm×297mm[백상지(80g/㎡)]

()년도 사업실적 보고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업실적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허위보고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여지거나,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해당되는 곳 []란에 √ 표를 합니다.

보고자	상 호	[]법인 []개인
	등록번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1. 사업별 요약실적 ※ 증명서류: 사업 근거서류(인·허가 서류 사본, 도급계약서 사본 등)

① 일 련 번 호	②사 업명	③인 · 허 가 명 의 자	④개발 유형		⑤매출액 (백만원)		⑥사업규모						⑦참 여유 형	⑧시 공 · 허 가 일	⑩착 공일	⑪준 공일	⑫공 급 시기	⑬신 탁 종류	⑭위 탁자 (등록 번호)	⑮비 고
														(인· 허가 관청)						
			토 지	시 설	분양매 출		임대매 출		토지 (m²)		시설 (m²)		준주 택 (호)							
					전 체	해 당 연 도	전 체	해 당 연 도	전 체	해 당 연 도	전 체	해 당 연 도	전 체	해 당 연 도						
계	건																			

2. 사업별 일반현황

(제2쪽)

일 련 번 호	사업명	개발 용도	위치 (개발사업 지주소)	지역, 지구, 구역			대지면 적(m ²)	건축면적 (m ²)	연면적(m ²)	건폐율 (%)	용적률(%)
				용 도 지 역	용 도 지 구	용도 구역					
계	건										

3. 복합개발사업 현황

일 련 번 호	사업명		총 면적(m ²)	개발유형1			개발유형2			개발유형3			개발유형4		
				코드	면적 (m ²)	호	코드	면적 (m ²)	호	코드	면적 (m ²)	호	코드	면적 (m ²)	호
		토 지													
		시 설													
		토 지													
		시 설													
		토 지													
		시 설													

4. 인허가 명의자 변경내역

일 련 번 호	사업명	변경일	변경 당시 개발된 규모		변경 전 인허가 명의자	
			토지(m ²)	시설(m ²)	인허가 명의자	개발업 등록번호

작성방법

1. 1 사업별 요약실적 중 ③개발유형란에는 다음의 개발유형별 부호코드 중 해당하는 코드를 기재합니다.

대분류	중분류	
L: 토지	L10: 용지개발	L110: 상업용지 L130: 관광·리조트 용지
	L20: 복합용지개발	-
S: 시설	S10: 상업·업무시설	S110: 근린생활시설 S112: 판매시설 S114: 숙박시설
		S210: 운수시설 S212: 공장
		S310: 주거용 오피스텔
	S20: 산업시설	S410: 관광리조트 시설
	S30: 준주택시설	-
	S40: 그 밖의 시설	-
	S50: 복합시설개발	-

2. 1 사업별 요약실적 중 ⑦참여유형란에는 다음의 참여유형 중 해당하는 유형을 기재합니다.

- A. 단독, B. 등록사업자+등록사업자, C-1. 등록사업자+지주(공동사업주체-공동수행방식), C-2. 등록사업자+지주(공동사업주체-분담수행방식),
D. 등록사업자+공공기관, E. 특수목적법인(설립근거 법률 명시), F. 기타

3. 1 사업별 요약실적 중 ⑩공급시기란에는 해당 사업별로 최초 공급계약일을 기재합니다.

4. 1 사업별 요약실적 중 ⑬신탁종류란에는 다음의 신탁종류 중 해당하는 유형을 기재합니다.

- T1. 개발형 토지신탁, T2. 관리형 토지신탁, T3. 관리신탁, T4. 처분신탁, T5. 담보신탁, T6. 분양관리신탁, T7. 그 밖의 신탁

5. 1 사업별 요약실적 중 ④사업비, ⑤매출액, ⑥사업실적의 전체란에는 해당 연도 말까지 발생한 매출액 및 조성한 사업면적을 기재하고, 해당 연도란에는 1년간 발생한 매출액 및 조성한 사업면적을 기재합니다.

6. 3 개발유형이 복합된 개발사업의 경우에 작성하며 사업의 일련번호는 1 사업별 요약실적과 같은 일련번호를 기재합니다.

7. 4 진행 중인 개발사업의 개발행위 인허가명의를 이전받은 경우에 작성하며 사업의 일련번호는 1 사업별 요약실적과 같은 일련번호를 기재합니다.

기 관 명

수신 시·도지사

(경유)

제목 사업실적 현황 보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사업실적 현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아 래 -

구분	토지						시설						준주택						참여유형[건(%)]					
	사업건수 (건)	사업비 (백만원)		매출액 (백만원)		사업면적 (㎡)	사업건수 (건)	사업비 (백만원)		매출액 (백만원)		사업면적 (㎡)	사업건수 (건)	사업비 (백만원)		매출액 (백만원)		사업규모 (호)	A	B	C	D	E	F
		해당연도	전체	해당연도	전체			해당연도	전체	해당연도	전체			해당연도	전체	해당연도	전체							
법인																								
개인																								
합계																								

참여유형 : A. 단독, B. 등록사업자+등록사업자, C. 등록사업자+지주(공동사업주체), D. 등록사업자+공공기관, E. 특수목적법인(설립근거 법률 명시), F. 기타

붙임 개발유형별 세부자료. 끝.

보고기관의 장 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m²]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변경 보고

※※뒤쪽의 경우·처리기관 확인사항, 작성방법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	------	---------

보고자	① 상호	대표자
	② 영업소(사무실) 소재지	③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등록번호

변 경 내 용				
변경구분	변경연월일	변경 전 사항	변경 후 사항	변경 사유
자본금(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				
임원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구 비 서 류

자본금 (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을 변경하는 경우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임원을 변경하는 경우	보고자 (대표자)	1.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2. 외국인인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법률에 의한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합니다),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법률에 의한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합니다),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 있는 기관이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경유· 처리기관 확인사항	1. 대표자 및 임원의 주민등록표등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여권 정보(신청인이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 제1호(주민등록표 등본만 해당합니다) 및 제2호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여권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을 변경하는 경우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 조제2항제2호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 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	보고자 (대표자)	1.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자격 또는 학위와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대한 고용계약서 사본 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특수목적법인이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특수목적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 사본 다. 나목의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설립 인·허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라. 나목의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경유· 처리기관 확인사항	1.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특수목적법인이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2.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제2호 후단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제2호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에 대한 경유·처리기관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고자가 직접 해당 서류(「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경유·처리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 경유·처리기관 확인 사항 중 임원을 변경하는 경우에 주민등록표 등본 및 여권정보,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고자가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고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작성 방법

①~③ : 보고자가 특수목적법인인 경우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상호, 영업소재지, 전화번호를 병기합니다.

